

[별지 제44호서식] <개정 2026. 7. 10.>

(열람)·(사본교부) 신청서		
구 분	(열람)·(사본교부) 대상	비 고
		열람일시 :
「정치자금법」 제42조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41조(제2항)·(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회계보고서에 대한 (열람을)·(사본교부를)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
년 월 일 성 명 : (인) 생년월일 : 주 소 :		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		
주		
1. “구분“란에는 “열람“ 또는 “사본교부“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 2.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수입인을 이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합니다. 3. 위 열람 또는 사본교부신청은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니다. 4. “열람·사본교부 대상“란에는 “재산상황“, “수입·지출내역“, “첨부서류“ 중 원하는 서류를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기재합니다.		